■ 법인세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2. 12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	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	
가.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		건별 1천만원
1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		
2)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		
3) 손실거래명세서		
4)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		
나.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: 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 명세서		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,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(1억원을 한도로 한다)
2.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	법 제12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	
가.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		건별 1천만원
1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		
2)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		
3) 손실거래명세서		
4)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		
나.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: 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(임대)		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, 처분가

및 처분 명세서		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(1억원을 한도로 한다)
3.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24조제1호	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(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
4.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24조제2호	
가.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		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(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
나. 그 밖의 명령		건별 50만원